

大韓脊椎外科學會 위원회 및 연구학회 업무 규정

(2025년 6월 26일 개정)

대한척추외과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대한척추외과학회지의 발간을 주관하여, 이 학회지가 세계의 우수한 학회지가 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대한척추외과학회 총무로 구성된다.

(1) 편집위원장

- ① 편집위원장은 평의원회의에서 추천을 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하며, 대한척추외과학회지 발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편집위원

- ① 편집위원은 20인 이하로 위원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이 중 1/3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총무는 편집위원장을 보조하여 학회지 편집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3.운영

(1) 심사위원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0명 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배정한 논문을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 ③ 심사위원은 척추외과학회지의 발전을 위하여 신속, 정확 및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유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 ①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논문을 A(무수정 통과), B(지적사항 교정후 통과), C(지적 사항 교정 후 재심사), D(논문을 거의 새로이 작성하지 않는 한 게재 불가), E(거절)로 판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에서는 대한척추외과학회지에 실린 논문 중 매년 기초 2편과 임상 2편의 우수 학술 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학술 및 의료평가위원회 규정

1. 목표

학회와 회원들의 학술 활동 및 의료 관련 행위에 대한 자문과 조정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학회와 회원들의 발전 및 위상 확립에 이바지한다.

2. 구성

학술 및 의료평가위원회는 학술 및 의료 평가위원장과 학술 및 의료평가위원, 대한척추외과학회 총무로 구성된다.

(1) 학술 및 의료평가위원장

- ① 학술 및 의료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의원회의에서 추천을 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며 대한척추외과학회의 학술 및 의료평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학술 및 의료평가위원

- ① 학술 및 의료평가위원회 위원의 수는 25명 이하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매년 이 중 1/2을 교체할 수 있다.
- ③ 학술 및 의료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무 1명을 선임한다. 총무는 위원장을 보조하여 위원회 활동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3. 운영

- (1) 1년에 2회의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며, 임시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학술대회에 응모한 논문을 심사 및 채택하며, 학술대회의 구성과 진행에 대한 안을 작성한다. 또한 학술대회 구연상의 대상자 선정에 참여한다.
- (3) 위원회는 학회 산하의 각 연구회 등이 주최하는 학술 및 교육 활동의 일정을 심사하고 조정한다.
- (4) 위원회는 의료 및 학술 활동에 대한 학회의 자문에 응하며 이첩된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의료 분쟁의 심의와 자문을 통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회원의 기강을 확립시키며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대한척추외과학회 전산위원회 규정

1. 목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전산 업무와 동 학회지의 색인 발간 업무를 주관하며, 본 학회가 세계의 우수한 학회 수준의 전산 시스템과 색인을 가지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구성

전산위원회는 전산위원장과 전산위원, 대한척추외과학회 총무로 구성된다.

(1) 전산위원장

- ① 전산위원장은 평의원회의에서 추천을 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전산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전산위원장은 전산위원회를 주관하며,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전산 업무와 학회지 색인집 발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전산위원

- ① 전산위원은 16인 이하로 위원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전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매년 이중 1/2을 교체할 수 있다.
- ③ 전산위원장은 전산위원 중에서 전산위원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총무는 전산위원장을 보조하여 전산업무 및 색인 편집에 대한 실무를 맡는다.

3. 운영

- ① 전산위원장은 전산위원회위원의 도움을 받아 학회 홈페이지 관리와 개선, 척추외과 회원 전산화 관리 등의 전산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전산위원은 전산위원장이 배정한 전산 및 색인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산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건의 사항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전산위원회의 개최는 학회장과 전산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특별한 소집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전산위원회는 차기 개최 시기와 장소를 위원장과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 후 폐회한다.
- ④ 색인집은 매년 마지막 호 척추외과 학회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대한척추외과학회 제도위원회 규정

1. 목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각종 제도의 제정 및 개선을 통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2. 구성

제도위원회는 제도위원장과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 차기회장, 대한척추외과학회 총무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1) 제도위원장

- ① 제도위원장은 평의원회의에서 추천을 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제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 ③ 제도위원장은 제도위원회를 주관하며 대한척추외과의 각종 제도의 제정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제도위원회의 운영

- (1) 제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및 제도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2) 제도위원회는 학회의 회칙 및 각종 위원회와 연구회의 규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고 필요 시 회칙 및 규정의 개선과 새로운 제정을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평의원회의 검토와 총회의 인준을 거친 후 본회의 새로운 회칙 및 규정으로 효력을 가진다.

대한척추외과학회 영문판학회지위원회 규정

1. 목표

대한척추외과학회 영문판 학회지 발간을 주관하여, 본 학회지가 세계의 우수한 학회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구성

대한척추외과학회 영문판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편집위원, 운영위원으로 구성 된다.

(1) 편집위원장

- ① 편집위원장은 평의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하며, 대한척추외과 영문판 학회지(Asian Spine Journal) 발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편집위원

- ① 국내 편집위원은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국외 편집위원은 30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3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총무는 편집위원장을 보조하여 학회지 편집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3) 운영위원

- ① 편집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편집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학회 회장, 차기 회장, 직전편집위원장, 자문위원 1인, 아시아태평양 척추학회 대표 2인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 중 자문위원 1인 및 아시아태평양 척추학회 대표 2인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문위원과 아시아태평양척추학회 대표 2인은 매년 새로 지명하되 재지명할 수 있다.

3. 운영

(1) 심사 위원

- 가)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30명 내외의 국내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배정한 논문을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중 1/2는 교체할 수 있다.

(2) 편집 위원

가)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나)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별도의 심사규정에 의하여 결정 한다.

다) 편집위원회에서는 대한척추외과학회 영문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매년 기초 1편과 임상 1편의 우수 학술 논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3) 운영위원

가)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나) 운영위원회는 영문판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 학회지배포에 관한 사항, 광고에 대한 사항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대한척추외과학회 보험위원회 규정

1. 목표

본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위원회로서 의료보험 전반에 관한 연구 분석을 통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와 관련된 의료보험 분야의 홍보와 개선을 도모한다.

2. 구성

보험위원회는 보험위원장과 보험위원, 대한척추외과학회 총무로 구성된다.

(1) 보험위원장

- ① 보험위원회 위원장은 평의원회의에서 추천을 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보험위원

- ① 보험위원은 40인 이하로 위원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보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 ③ 보험위원장은 보험위원 중에서 보험위원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총무는 보험위원장을 보조하여 보험위원회 업무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3. 사업

보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의료보험 전반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
- (2) 의료보험과 관련된 분야의 개선
- (3) 보험에 관한 연구, 검토 및 건의
- (4) 의료보험에 관련된 자문 및 질의 회신
-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척추외과학회 홍보위원회 업무규정

1. 목표

본회는 본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위원회로서 대내외적인 홍보를 위하여 효과적인 홍보 방안 수립을 목표로 한다.

2. 구성

홍보위원회는 홍보위원장과 홍보위원, 대한척추외과학회 총무로 구성한다.

(1) 홍보위원장

- ① 홍보위원회 위원장은 평의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홍보위원

- ① 홍보위원회 위원은 15인 이하로 위원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을 교체할 수 있다.
- ③ 홍보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홍보위원회 총무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총무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업무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3. 사업

홍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국내외 홍보
- (2) 언론 관련 홍보
- (3) 학회사 발간 사업
- (4) 학회 소식지 발간
- (5) 대외협력, 섭외에 관한 업무
- (6) 학회의 주요한 사료 수집 및 관리
- (7) 기타 홍보와 관련된 주요 사항

대한척추외과학회 교육위원회 업무규정

1. 목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전임의 교육을 주 업무로 하며, 전임의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학회에서 인증된 척추외과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구성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총무, 교육 위원, 대한척추외과학회 총무로 구성된다.

(1) 교육위원회 위원장

- ①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평의원회의에서 추천을 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주관하며, 전임의 교육 및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2) 교육위원

- ① 교육위원은 20인 이하로 위원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매년 이중 1/2을 교체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위원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총무는 교육위원장을 보조하여 교육위원회 활동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3. 운영

- ① 교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혹은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전임의 교육을 신청한 수련 병원의 인증을 주관한다.
- ③ 위원회는 전임의를 대상으로 하는 실기 실습을 위임을 받아 주관한다.
- ④ 교육위원은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실기 실습 등의 세부 운영 및 프로그램 구성에 참여한다.
- ⑤ 위원회는 학회의 인증 조건을 충족한 전임의에 대해 평의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대한척추외과학회 재정위원회 업무규정

1. 목표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소유한 자산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며, 학회 수익 증진을 추구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2. 구성

재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현회장, 차기회장, 전임회장, 현총무, 전임총무, 부총무이며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3명(자문위원 및 평회원)으로 구성하며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1) 재정위원회 위원장

①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겸임한다.

(2) 위원

① 임명직 재정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학회 총무가 간사를 맡는다.

③ 감사는 제외한다.

④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수 있다.

3. 운영

① 재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는 본 학회가 소유한 자산유지 및 관리, 수익 증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학회 자산 목록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수익활성화를 위해 연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대한척추외과학회 요추연구학회 업무규정

1. 목표

본 학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연구학회로서 경추외과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한 연구, 홍보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및 회의

경추연구학회는 회장, 연구학회 위원, 총무, 감사, 연구학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 ① 경추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에서 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경추연구학회 회장 후보는 연구학회에서 회장 선출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고, 연구학회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 1년을 추가로 재 연임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경추연구학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학회 위원

- ①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회원 중 40인 이하로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 ③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3) 총무

- ①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 위원 중에서 경추연구학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 ②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총무 후보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총무는 연구학회 회장을 보조하여 경추연구학회 업무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4) 감사

- ①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 위원 중에서 감사 1명을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③ 감사는 연구학회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한다.

(5) 연구학회 회원

- ①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6) 총회의 소집 및 의결은 대한척추외과학회 정관을 준용한다.

3. 사업

경추연구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경추외과 연수강좌
- (2) 경추질환의 이해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3) 경추질환에 대한 의료자문
- (4) 경추연구학회의 홍보를 위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척추외과학회 경추연구학회 업무규정

1. 목표

본 학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연구학회로서 경추외과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한 연구, 홍보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및 회의

경추연구학회는 회장, 연구학회 위원, 총무, 감사, 연구학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 ① 경추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에서 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경추연구학회 회장 후보는 연구학회에서 회장 선출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고, 연구학회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 1년을 추가로 재 연임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경추연구학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학회 위원

- ①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회원 중 40인 이하로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 ③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3) 총무

- ①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 위원 중에서 경추연구학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 ②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총무 후보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총무는 연구학회 회장을 보조하여 경추연구학회 업무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4) 감사

- ①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 위원 중에서 감사 1명을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③ 감사는 연구학회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한다.

(5) 연구학회 회원

- ①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6) 총회의 소집 및 의결은 대한척추외과학회 정관을 준용한다.

3. 사업

경추연구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경추외과 연수강좌
- (2) 경추질환의 이해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3) 경추질환에 대한 의료자문
- (4) 경추연구학회의 홍보를 위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척추외과학회 척추변형연구학회 업무규정

1. 목표

본 학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연구학회로서 척추의 변형 및 이에 동반된 질환의 연구와 국민 보건의 향상을 위한 기획, 연구, 홍보와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로서의 의무준수, 품위향상과 업무의 개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및 회의

척추변형연구학회는 회장, 연구학회 위원, 총무, 감사, 연구학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 ① 척추변형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에서 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척추변형연구학회 회장 후보는 연구학회에서 회장 선출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고, 연구학회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 1년을 추가로 재 연임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척추변형연구학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학회 위원

- ①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회원 중 40인 이하로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 ③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3) 총무

- ①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 위원 중에서 척추변형연구학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 ②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총무 후보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총무는 연구학회 회장을 보조하여 척추변형연구학회 업무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4) 감사

- ①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 위원 중에서 감사 1명을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③ 감사는 연구학회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한다.

(5) 연구학회 회원

- ①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6) 총회의 소집 및 의결은 대한척추외과학회 정관을 준용한다.

3. 사업

척추변형연구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척추의 변형 연구의 기획, 연구 및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등 척추변형 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 (2) 척추 변형 연구 분야의 국민 보건을 위한 교육, 수련 및 홍보 사업
- (3) 척추 변형에 대한 의료자문
- (4) 척추변형연구학회 홍보를 위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척추외과학회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업무규정

1. 목표

본 학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연구학회로서 척추 질환 및 외상의 최소침습적 치료에 대한 연구와 국민 보건의 향상을 위한 기획, 연구, 홍보와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로서의 의무준수, 품위향상과 업무의 개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및 회의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는 회장, 연구학회 위원, 총무, 감사, 연구학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 ①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에서 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회장 후보는 연구학회에서 회장 선출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고, 연구학회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 1년을 추가로 재 연임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학회 위원

- ①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회원 중 40인 이하로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 ③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3) 총무

- ① 연구학회회장은 연구학회 위원 중에서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 ②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총무 후보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총무는 연구학회 회장을 보조하여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 업무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4) 감사

- ①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 위원 중에서 감사 1명을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③ 감사는 연구학회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한다.

(5) 연구학회 회원

- ①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6) 총회의 소집 및 의결은 대한척추외과학회 정관을 준용한다.

3. 사업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척추의 최소침습적 치료 연구의 기획, 연구 지원 및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등 척추 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 (2) 척추의 최소침습적 치료 분야의 국민 보건을 위한 교육, 수련 및 홍보 사업
- (3) 척추의 최소침습적 치료에 관련된 의료자문
- (4) 본연구학회 홍보를 위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척추외과학회 척수신경연구학회 업무규정

1. 목표

본 학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연구학회로서 척수 및 신경근에 관한 임상 및 기초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2. 구성 및 회의

척수신경연구학회는 회장, 연구학회 위원, 총무, 감사, 연구학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 ① 척수신경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에서 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척수신경연구학회 회장 후보는 연구학회에서 회장 선출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고, 연구학회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 1년을 추가로 재 연임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척수신경 연구학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학회 위원

- ①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회원 중 40인 이하로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 ③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3) 총무

- ①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 위원 중에서 척수신경연구학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 ②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총무 후보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총무는 연구학회 회장을 보조하여 척수신경 연구학회 업무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4) 감사

- ①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 위원 중에서 감사 1명을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③ 감사는 연구학회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한다.

(5) 연구학회 회원

- ①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6) 총회의 소집 및 의결은 대한척추외과학회 정관을 준용한다.

3. 사업

척수신경연구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척수 및 신경근에 관한 기초 및 임상 연구의 기획, 연구 지원 및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등 척수 신경 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 (2) 척수 손상 치료 분야의 국민 보건을 위한 교육, 수련 및 홍보 사업
- (3) 척수 신경 손상의 치료 및 예후에 관련된 의료자문
- (4) 척수신경연구학회 홍보를 위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척추외과학회 기초연구학회 업무규정

1. 목표

본 학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연구학회로서 척추와 관련된 기초 연구를 활성화, 발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및 회의

척추기초연구학회는 회장, 연구학회 위원, 총무, 감사, 연구학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 ① 척추기초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에서 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척추기초연구학회 회장 후보는 연구학회에서 회장 선출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고, 연구학회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 1년을 추가로 재 연임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척추기초연구학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학회 위원

- ①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회원 중 40인 이하로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 ③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3) 총무

- ①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 위원 중에서 척추기초연구학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 ②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총무 후보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총무는 연구학회 회장을 보조하여 척추기초연구학회 업무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4) 감사

- ①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 위원 중에서 감사 1명을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③ 감사는 연구학회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한다.

(5) 연구학회 회원

- ①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6) 총회의 소집 및 의결은 대한척추외과학회 정관을 준용한다.

3. 사업

척추기초연구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척추와 관련된 기초 연구의 기획, 연구 지원 및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등 척추 기초 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 (2) 척추와 관련된 기초 연구의 교육 사업
- (3) 척추기초연구학회 홍보를 위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척추외과학회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업무규정

1. 목표

본 학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연구학회로서 골다공증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척추 병변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발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및 회의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는 회장, 연구학회 위원, 총무, 감사, 연구학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 ①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에서 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회장 후보는 연구학회에서 회장 선출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고, 연구학회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 1년을 추가로 재 연임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학회 위원

- ①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회원 중 40인 이하로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 ③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3) 총무

- ①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 위원 중에서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 ②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총무 후보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총무는 연구학회 회장을 보조하여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업무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4) 감사

- ①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 위원 중에서 감사 1명을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③ 감사는 연구학회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한다.

(5) 연구학회 회원

- ①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6) 총회의 소집 및 의결은 대한척추외과학회 정관을 준용한다.

3. 사업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등 척추골다공증 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 (2) 척추외과 회원 및 일반인을 위한 교육 사업
- (3) 골다공증 약제에 대한 조사 및 비교 사업
- (4) 척추골다공증연구학회 홍보를 위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척추외과학회 척추통증연구학회 업무규정

1. 목표

본 학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분과 연구학회로서 척추 통증 분야에 대한 연구와 치료 방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혹시라도 난립할 수 있는 여러 통증 치료들의 학문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함을 최고의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및 회의

척추통증연구학회는 회장, 연구학회 위원, 총무, 감사, 연구학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 ① 척추통증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에서 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척추통증연구학회 회장 후보는 연구학회에서 회장 선출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고, 연구학회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 1년을 추가로 재 연임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척추통증연구학회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학회 위원

- ①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회원 중 40인 이하로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이중 1/2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 ③ 연구학회 위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3) 총무

- ①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 위원 중에서 척추통증연구학회 총무 1명을 선임한다.
- ②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총무 후보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총무는 연구학회 회장을 보조하여 척추통증연구학회 업무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4) 감사

- ① 연구학회 회장은 연구학회 위원 중에서 감사 1명을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③ 감사는 연구학회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한다.

(5) 연구학회 회원

- ①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학회 회원은 연구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6) 총회의 소집 및 의결은 대한척추외과학회 정관을 준용한다.

3. 사업

척추통증연구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척추 통증 치료 연구의 기획, 연구 지원 및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등 척추 통증 분야 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 (2) 척추 통증 치료 분야의 국민 보건을 위한 교육, 수련 및 홍보 사업
- (3) 척추 통증을 원인 및 치료에 관련된 의료자문
- (4) 척추통증연구학회 홍보를 위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